

부산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1243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

##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재인, 정우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0. 18.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2. 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36,255,3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255,3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카드론대금채권,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현금서비스이용대금채권 등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2) 피고와 C은 망 D의 자녀들이다.

####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03. 10. 24.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이들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
- 2) 원고는 2006. 12. 8.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81339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5. “C은 원고에게 8,869,844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7. 5. 2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7. 5. 확정되었다.
- 3)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4. 25.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88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8,869,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5. 2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7.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4)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21. 12. 17.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36,255,303원이다.

#### 다. C의 재산처분과 무자력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는 2002. 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와 C(각 법정상속분 1/2)이 있었다.

2) 피고와 C은 2020. 12. 3.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12.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C은 이 사건 분할약정 체결 당시 D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쟁점별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약정 전에 성립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인 2006. 12. 8.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5. 그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7. 5. 확정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여부 등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D를 그 사망 전까지 피고가 전적으로 부양한 사정을 감안하여 C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거나, ② C과는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약정으로 인하여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기여분 등이 반영되어 법정상속분이 수정된 것)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C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의 재산상태, C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이때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2. 13.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8,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12. 23.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마.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피고가 2020. 12. 13.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8,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적어도 44,000,000원 이상이라고 추인되므로,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채권금액인 36,255,303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약정은 원고의 채권금액 36,255,3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6,255,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약정은 36,255,3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6,255,3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성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구 I아파트 J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K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L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6.36㎡

